이사회규정

제 정 2006. 3. 23 개 정(1) 2006. 12. 19 개 정(2) 2008. 11. 27 개 정(3) 2016. 1. 4 개 정(4) 2022. 5. 2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투자공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그 직무를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- ②이사의 호칭은 부사장으로 한다.
- ③정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 표결권은 없다.

제3조(소집) ①이사회 소집은 사장이 한다.

- ②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임시이사회는 사장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3일전까지 각 임원에게 심의안건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의결사항)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
- 2.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
- 3. 공사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4. 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준법감시인
- 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사 임 원·직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의결방법) ①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그러나 긴급하거나 토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.

②이사회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면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구성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구성원은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보고사항)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7조(의결권 행사의 제한)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8조(의사록) ①이사회업무 소관부서장은 의사록의 작성·보관 등 이사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②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사회 운영)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부 칙 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)

제**1조(시행일**)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